

1. 개정이유

소년소녀가정 지침 지원대상자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고,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포함(안 제7조)
- 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무상지원 기간 연장(안 제7조)
- 다. 사업시행자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수정 및 만나이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등

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세대를 말한다.
7.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 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자(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종료아동(보호조치)”를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제6조제1항 단서 중 “다만, 법인이 소유자인 임대주택”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만 20세”를 “20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종료아동(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인 경우”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혹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인 경우, 22세 이전까지 무상지원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 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는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중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대리양육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를 말한다.</p> <p>4. “친인척위탁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를 말한다.</p> <p>5. “일반가정위탁”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를 말한다.</p> <p>6.·6의2. (생략)</p> <p>7.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세대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6.·6의2. (현행과 같음)</p> <p>7.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p>

<신 설>

8. (생략)

제3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관리에 필요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사업시행자가 공급(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자(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

-----.

제4조(지원대상자) ① -----

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가정
위탁

2. 보호종료아동(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3.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6조(지원대상 주택) ①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소유자인 임대주택, 본인과 배우자 및 후견인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제7조(지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전세

-----.

--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1.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2.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

3. 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주택) ① -----

---. 다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조건) ① -----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 등에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1조(가구당 지원한도액) 가구당 주택도시기금 지원한도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는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가구당 지원한도액) -----
----- 「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
-----.